

소 장

원 고 이인수 외 5명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외 1명

전시금지청구 등

2015. 3. .

원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 용 우

담당변호사 김 무 겸

담당변호사 이 무 섭

담당변호사 배 준 식

원고 6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 권 성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목 차 -

1. 서언 -----	3
2. 당사자의 지위 -----	4
가. 원고 -----	4
나. 피고 -----	5
3. 제주4·3사건, 특별법, 제주4·3평화기념관 -----	6
가. 제주4·3사건 -----	6
나. 특별법 -----	7
다. 제주4·3평화기념관 -----	12
4. 전시내용의 요지 및 전시관의 역할 -----	12
가. 전시내용의 요지 -----	12
나. 전시관의 역할 -----	14
5. 전시내용의 문제점 분석 -----	15
가. 진압의 당위성을 알게 하는 사실의 묵비 -----	15
(1) 남로당의 공산주의 정치노선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남로당 당수 박헌영 -----	16
2) 남로당의 정치노선 -----	17
3) 남로당 무장대장 김달삼의 행적 -----	18
4) 이러한 사실의 묵비 -----	19
(2) ‘탄압’의 원인이 된 남로당의 불법 폭력투쟁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정관사 화폐위조 사건 -----	22
2) 1946. 9. 총파업 -----	23
3) 1946. 10. 1. 대구폭동 -----	23
4) 1947. 3. 1. 시위 -----	24
5) 1948. 2. 7. 폭동 -----	25
6) 소결 -----	26

나. 무장폭력투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묵비

- (1) 경찰과 서청의 남로당에 대한 탄압을 마치 제주도민 일반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 27
- (2) 단선 단정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단선 단정 반대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 28
- (3) 제주4·3사건과 관련이 없는 각종 민중항쟁 영상과 제노사이드 영상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제주4·3사건의 성격을 은연중 암시하였습니다. ----- 31

6. 관람자들이 가지게 될 평가와 인식 ----- 32

7. 불법행위의 성립 ----- 34

가. 사료의 전시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무에 위배 ----- 34

- (1) 헌법상의 의무 ----- 34
- (2) 법률상의 의무 ----- 35
- (3) 신의칙상의 의무 ----- 36
- (4) 위 각 의무에 위배 ----- 37

나. 이승만과 진압 군경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	38
다. 대한민국 애국 시민, 단체 등에 대한 자긍심 훼손 등 인격권 침해 -	39
라. 전시금지 및 손해배상의무 -----	40
8. 여론 - 관할의 문제 -----	41
9. 결론 -----	42

소 장

원 고 1. 이인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1길 32 (이화동)

2. 박익주

서울 마포구 상수동 395 밤섬리버브빌 201호

3. 박능하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363번길 27 102동 205호 (작전동, 동보
아파트)

4. 김수근

서울 강서구 강서로24길 37 302호 (화곡동, 대덕하이츠빌라)

5. 이선교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44길 44 다동 103 (쌍문동, 완성빌라)

6.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405호(서초동, 한승아스트라2)

대표자 이사 김태훈

원고 1, 2, 3, 4,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 김무겸, 이무섭, 배준식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삼성동, 도심공항타워 8층)

(우편번호 135-973, 전화 02-2188-1040, 팩스 02-2188-1091)

원고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성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2, 506호(서초동 한승아스트라2)

(우편번호 137-885, 전화 02-599-4434, 팩스 02-517-8967)

피 고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대표자 도지사 원희룡

2.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제주시 명림로 420, 제주4·3평화기념관(봉개동)

대표자 이사 이문교

전시금지청구 등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제주시 명림로 430 소재 제주4·3평화기념관에 제주4·3사건 관련 사진 및 설명패널, 전시용 영상 등 일체의 전시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 이인수에게 100,000,000원, 원고 박익주에게 50,000,000원, 원고 박능하, 김수근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들은 각자 2015. 1. 15.부터 제1항 기재 전시물의 전시를 중단하는
날까지 원고 이인수에게는 월 10,000,000원, 원고 박익주에게는 월
5,000,000원, 원고 박능하, 김수근에게는 각 월 2,0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서언

제주시 명림로 430 소재 제주4·3평화기념관에는 제주4·3사건 관련 사료를 비롯한 각종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전시’라고 합니다).

본 소송은, 제주4·3사건의 발생 배경에 대한민국의 출범 자체를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세력과 시도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전시가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또는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러한 위법한 전시의 금지

를 구하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제주4·3사건 발발 후 그 진압 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당하였고, 그 희생자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로 누명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연좌제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바, 본 소송의 원고들은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과 그 후손들의 고통에 대하여는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그들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명예회복조치와 적절한 형태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한 치의 이의도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오직 이 사건 전시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1) 원고 이인수 :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이자 제주4·3사건 진압

의 최고책임자였던 이승만의 양자입니다(갑 제1호증의 1 제적등본).

(2) 원고 박익주 : 제주4·3사건 당시 진압에 참가하였던 국군 제11연대의 연대장 박진경의 양자입니다(갑 제1호증의 2 제적등본).

(3) 원고 박능하, 김수근 : 제주4·3사건 당시 진압군의 장교, 사병으로 참가하여 진압작전에 직접 참여하였던 당사자입니다(갑 제1호증의 3,4 각 병적증명서).

(4) 원고 이선교 : 시민단체인 ‘제주4·3사건 역사 바로 세우기 대책위원회’의 대표입니다(갑 제1호증의 5 사실확인서).

(5) 원고 ‘사단법인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라고 합니다) : 북한의 인권 개선과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활동 등을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단체입니다(갑 제1호증의 6 법인등기부등본).

나. 피고

(1)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 당초 이 사건 전시의 내용을 결정하여 2008. 3. 28.부터 현재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 내에 이를 전시하여 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 피고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제8조의2에 의하여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법인으로서, 2015. 1. 15.자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4·3평화기념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아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전시를 포함한 제주4·3사건 관련 사료를 전시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3. 제주4·3사건, 특별법, 제주4·3평화기념관

가. 제주4·3사건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1948. 5. 10. 실시되는 제헌국회의원선거 및 이에 기초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속 무장대를 동원하여 그 해 4. 3. 02:00 일제히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 등을 습격하여 경찰관들과 선거 관련 인사 다수를 사망케 하는 등으로 5·10선거를 저지하고, 그 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다만, 이 사건 전시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을 「1947. 3. 1. 을 기점으로 19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의는 학문적 연구의 성과가 아니고 여야 간 정치적 협상의 산물입니다. 그 결과 위 정의에 관하여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므로, 본문에서의 상론은 피하겠습니다.

다.¹⁾

나. 특별법

(1)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제주4·3사건은 공산반란, 공산폭동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희생자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혔고, 그 가족들은 연좌제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희생자의 대부분은 이념과는 무관한 양민들이었음이 알려지게 되고, 일부에서는 공산폭동이라는 성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벗겨줄 것과 종전의 성격 규정에 대한 재고를 주장하면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국회에서 이러한 제주도민의 염원이 담긴 ‘제주도4·3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고, 1999. 12. 16. 드디어 이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0. 1. 12. 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 특별법상 제주4·3사건 정의 규정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먼저 제주4·3사건의 기점을 1947. 3. 1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1947. 3. 1에 발생한 시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 정부 수립을 향한 남로당의 일반적인 정치투쟁의 하나로서 합법적인 집회허가에서 출발하였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인명이 희생된 것이었음에 비하여, 제주4·3사건은 단선 단정 반대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로당 무장대의 기습적인 전투행위로 개시되었으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방법 등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3·1 시위는 제주4·3사건에 이르는 사회적 배경상황의 하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제주4·3사건 자체의 기점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제주4·3사건의 기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진상규명을 통하여 확정될 문제인데 이를 법에서 미리 정해둠으로 말미암아 진상규명이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② 다음으로 무장대의 투쟁 목적이 대한민국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단선 단정 반대였음은 너무나 분명한데도 이러한 목적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제주4·3사건의 성격규명에 혼란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남로당 무장대의 기습적인 전투행위 개시로 경찰관들과 선거 관련 인사 다수가 사망한 충격적인 전쟁행위를 단순히 ‘소요사태’로 표현함으로써 사태의 진상을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④ 소위 ‘무력충돌’의 일방 당사자가 남로당 제주도당임에 이론이 없는데도 충돌 당사자를 누락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싸운 상대방의 특징에 혼선을 가져올 소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 정의규정은 제주4·3사건과는 무관한 3·1절 행사를 끌어들이고, 그 목적이나 주체를 숨기고 그 피해상황을 축소함으로써 제주4·3사건의 실체를 왜곡, 은폐하고 있는바, 이는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전시의 문제점과도 상통하는 점들입니다.

(2) 그런데, 특별법 자체도 여야 간 정치협상의 산물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 규명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명예회복 조치 등을 받게 되는 ‘희생자’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4·3사건의 진상부터 규명되어야 합니다. 진상이 먼저 규명되어야 그에 따라 희생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²⁾. 그럼에도 특별법에 내재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희생자’가 먼저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특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합니다)는 진상규명 업무와 희생자결정 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법 제3조), 특별법은 ① 양자의 처리순서의 선후를 규정하지 않은데다가, ② 진상규명 절차는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로 2년 6개월의 장기간이 걸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법 제6조, 제7조. 자료수집과 분석에 2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그 후 6개월), 희생자 결정 절차는 즉시 착수하도록 하면서도(법 제10조 참조) 처리기간을 정해두지 않은 문제점으로

2) 아래에서 보는 헌법재판소 결정(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에서도, 진상부터 철저히 규명한 뒤에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위 결정 4. 나.항 참조).

인하여,

위원회는 진상규명 절차가 착수되기도 전인 2000. 6. 8.부터 벌써 희생자 신고를 받기 시작하여(갑 제2호증의 2 화해와 상생 제133면) 2002. 3. 14. 희생자결정 기준을 확정시켰으며(갑 제2호증의 3 화해와 상생 제148면 ~ 제150면), 진상조사보고서 초안의 작성 초기 무렵이던 2002. 11. 20. 벌써 제1차 희생자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갑 제2호증의 4 화해와 상생 제174면).

[진상규명 작업의 진행 과정은, 2000. 9.부터 2001. 2.까지 자료 목록 작성, 조사 대상 기관 선정, 증언 조사 대상 선택,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1. 3.부터 2002. 8.까지 국내외 자료 수집, 국내외 증언조사 실시, 수집 자료 분석, 수집 자료집 발간의 활동을 하였고, 2002. 9.부터 2003. 2.까지 진상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5 화해와 상생 제68면 ~ 69면), 이후 진상조사보고서 초안을 심의하면서 33건의 수정안을 반영하여 2003. 10. 15. 최종 확정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6 화해와 상생 제93면 ~ 제102면)].

그런데 위원회는 위 희생자결정기준을 정하면서 ‘사망자들의 명예회복과 국민화합’을 더 중시한 나머지 4·3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행불 등 포함 이하 같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희생자’에 포함시켜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한 결과³⁾ 이후 위원회가 한 희생자 결

3) 위 희생자 결정기준(갑 제2호증의 3 화해와 상생 제148면 ~ 제150면)에 의하면, 사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희생자’로 결정해 주기로 하되, 다만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나 무장대의 ‘수괴급’에 한하여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반대 측 참여가 봉쇄되어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진행된 희생자결정 절차에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사람이 없어 사실상 사망자들은 모두 희생자로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정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그 중에는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⁴⁾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⁵⁾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계자 등을 살해한 자,⁶⁾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까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⁷⁾.

이러한 결정은 이미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현재결정에서는 위와 같은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헌법질서에서 보호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⁸⁾

이러한 결과는 진상부터 먼저 규명한 후 그에 따라 희생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진상 규명이 완료되기도 전에 성급히 희생자결정부터 먼저 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인바, 특별법의 입법미비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김의봉(28세, 남로당 무장대의 3대 사령관) 외 4명

5) 현호경(38세, 남로당 제주도당 제주위원회 결성에 참여한 주요활동가이자 선전부장) 외 10명

6) 송원병(35세, 무장 유격대로 경찰지서 습격을 주도) 외 15명

7) 이들 63명에 대하여 임두병 외 12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희생자결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473).

8)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람들이 ‘희생자’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건국에 필수적 절차였던 5·10제헌의회선거와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별법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희생자로 인정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이를 재심사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⁹⁾. 위원회가 희생자로 인정하는 결정은 결정 즉시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합니다. 같은 위원회가 이미 확정 시켜 놓았거나 향후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확정 시키게 될 희생자 결정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상의 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로당 무장대의 지휘관들이나 주요 간부들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어 정부로부터 명예회복조치와 일정한 지원금까지 받도록 되어 있으니 그러한 사람들의 죽음까지도 억울하거나 의로운 죽음이 되도록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정해 졌다는 것입니다¹⁰⁾.

이러한 사실은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회의에서 간사위원(강창일)의 다음과 같은 발언 즉 ‘진상조사보고서는 피해진상조사보고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법 자체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시키기 위한 보고서로서 존재합니다.’ (갑 제4호 중 기획단 회의록) 라는 발언이나, 기획단 전문위원(나종삼)의 ‘진상조사보고서는 희생자 명예회복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양조훈 팀장의 주장에

9) 특별법 제12조 재심의의 규정은 2007. 1. 24. 비로소 신설된 규정인바, 그것도 희생자 신고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법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진상규명이 왜곡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본질과 현상」 2013 여름호 게재 현길언 논문 ‘과거사 청산과 역사만들기’ 제125면 ~ 제128면 참조(갑 제3호증).

바탕을 두고 그런 방향으로 집필되었다,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가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였다’는 증언(갑 제5호증 나종삼 著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돌이켜 보면서)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와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전시가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왜곡하는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¹¹⁾

다.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4·3사건특별법 제3조는 위원회로 하여금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8조의2는 정부는 제주4·3사료관의 운영,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제주4·3평화공원 내에 제주4·3사료관으로서 제주 4·3평화기념관이 설치되었고, 이 사건 전시는 제주4·3평화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4. 전시내용의 요지 및 전시관의 역할

가. 전시내용의 요지

11) 원고 이인수 등은 특별법이 희생자결정의 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희생자결정을 낳게 하였다는 점에 치중하여 4·3특별법과 위원회의 희생자결정의 위헌 무효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0.11.25. 선고 2009헌마146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0.11.25. 선고 2009헌마147 전원재판부 결정). 그러나, 원고들은 희생자결정의 문제점과 함께 진상규명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도 함께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피고들은 전시관 내에 전시관 안내 브로셔를 비치하여 관람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브로셔에는 제주4·3사건의 성격을 말해 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①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무장 봉기” (갑 제6호증 브로셔 2면 ‘제주4·3사건이란?’ 부분 참조)

② 그것은 “불의에 맞선 저항” (갑 제6호증 브로셔 3면 ‘4·3평화기념관의 성격’ 부분 참조)

③ 저항의 주체는 “제주도민” (갑 제6호증 브로셔 3면, ‘4·3평화기념관의 성격’ 부분 참조).

④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처참한 살육” 으로 진압(갑 제6호증 브로셔 3면, ‘4·3평화기념관의 성격’ 부분 참조).

결국 피고들이 위 브로셔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제주4·3사건의 성격은 「경찰과 서청의 부당한 탄압과 이승만의 불의한 단선·단정 추진에 맞서서 제주도민이 일으킨 정당한 저항인데,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처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는 이 사건 전시내용 전체를 관류하고 있습니다.

(2) 한편, 피고들은 전시관 내에 제주4·3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상

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는바, 즉, ① 5.18 광주민주화운동, 넬슨 만델라의 남아공 인종차별 철폐운동, 필리핀의 독재타도를 위한 민중봉기 등 역사상의 여러 민중항쟁의 영상들과, ② 독일 나치스의 유대인 학살,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등 20세기에 벌어진 반인륜적인 대학살의 영상들이 그것입니다.

(3) 위와 같은 제주4·3사건의 진상 소개는 곧 앞에서 본 선(先) 희생자결정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요, 뒤에서 보게 되는 이 사건 전시의 문제점 분석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 전시관의 역할

브로셔에도 나와 있듯이, 피고들은 이 사건 전시관을 한국현대사(해방 전 후사)에 대한 전문역사관으로 자리매김하여, 당시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함과 함께 특히 미래를 사는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교육과 교훈의 산실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 브로셔 3면, ‘4·3평화기념관의 성격’ 부분 참조). 이는 특별법 제8조(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① 2008년 개관 이래 매년 20만 명 이상이 전시관을 방문하여 무료 관람을 해 오고 있으며(**갑 제7호증** 제주도 2013 주요업무보고

제32면), 이중에는 특히 제주도 외의 관람객과 초중고생 등 청소년 단체관람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② 2013년 이후에 채택되는 중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으로 제주4·3사건을 소개하도록 단계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위 업무보고 31면).

5. 전시내용의 문제점 분석

이 사건 전시관에는 제주4·3사건 발발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주4·3사건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간략한 설명을 붙인 수많은 사진 영상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전시하고 있는바, 각각의 영상에 대한 개별적인 문제점 지적은 추후 별도의 준비서면으로 주장하기로 하고, 소장에서는 전시 내용 전체에 대한 구조적이고 총론적인 문제점만 주장하기로 합니다.

가. 진압의 당위성을 알게 하는 사실의 묵비

전시관의 초입에 미리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제주4·3사건 전체의 성격이나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후세의 역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의 소개(전시)는 공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주4·3사건은 그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사건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그 당시 남로당 무장대가 폭력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해 주었어야 할 것이었는가, 아니면 이

를 진압하여야 할 것이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에 관계되는 사실관계는 공정하게 전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전시에서는 진압의 정당성을 알게 하는 사실은 일체 묵비하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로당의 공산주의 정치노선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남로당 당수 박헌영

남로당의 정치노선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을 창건하고 이끌어 간 당수 박헌영의 사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는 20세 때인 1920년에 벌써 상해에 가서 고려공산당에 입당하였다가 1922년 국내에 잠입하여 1925년 조선공산당을 창당한 후 소련 공산당과 콰인테른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라 온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공산주의 탄압으로 6년간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되었고, 복역 후에는 피신 생활을 계속하던 중 8.15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그는 공산당 재건에 착수하여 드디어 1945. 9. 조선공산당 재건을 마치고 당 책임비서에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미군정 하에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하여 온갖 비합법투쟁을 계속하다가 미군정의 체포령이 떨어지자 1946. 9. 소련의 점령지역인 북한 해주로 탈출하여 그 곳에서 계속 남쪽의 조선공산당을 지도하면서 소위 9월 총파업, 10월 대구폭동 등을 일으켰습니다. 1946. 11. 23.

에는 군소 좌파 정당(인민당과 남조선 신민당)을 끌어 들이면서 당명을 보다 온건한 이미지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으로 개칭하였지만, 당의 노선이나 박헌영의 지휘체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하여 남로당을 지휘하면서 1947년의 3·1 시위, 1948. 2.의 소위 2·7폭동을 일으켰고, 제주4·3 사건 이후 북한에 김일성 정부가 들어서자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에게 주도권을 뺏기어 북한의 부수상 겸 외상으로 있다가 6·25 후 김일성에 의하여 미군 첩자였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한 마디로 그는 철저한 골수 공산주의자였습니다(갑 제8호증의 2 박갑동 저 ‘박헌영’ 제283면 ~ 제287면 등 참조).

2) 남로당의 정치노선

남로당의 정치노선은 그 창건자인 박헌영의 사상 그대로 고전적인 공산주의(communism)였습니다. 1945. 9. 조선공산당 재건 당시에 채택된 당면정책을 보면,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통하여 조선노동계급의 완전한 해방으로서 착취와 압박이 없고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을 최후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갑 제9호증의 2 신상준 저 ‘제주4·3 사건’ 상권 165면 등). 그 당시 이미 국제공산주의의 맹주인 소련의 스탈린은 한창 위세를 떨치면서 동구라파에서 공산주의 정권들을 속속 탄생시켜 놓은 때였으므로(소위 동구 위성국가), 남로당도 한반도에서 그러한 공산주의 정권을 탄생시키고자 한 것이었고, 이로써 한반도에도 소련의 한 위성국가가 탄생되는 것

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남로당 무장대장 김달삼의 행적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3) 남로당 무장대장 김달삼의 행적

제주4·3사건을 주도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장 김달삼은 무장투쟁이 한창이던 1948. 8. 북한으로 올라가 김일성 정부의 탄생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북한 김일성은 그가 수립하려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고자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인민들까지도 그 정권 수립에 참여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정권 수립을 위한 대의원(국회의원 격임)을 선출함에 있어 남한 인민을 대변하는 대의원도 참여시켜야 한다면, 당시 남한의 상황으로는 북한정권 수립을 위한 대의원선거를 공개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었으므로 소위 ‘지하선거’라 하여 남로당 지하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비공개리에 대의원 선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무장대원들이 주민을 협박하고 강요하여 아무런 의미도 모르는 주민들로 하여금 백지에 지장을 찍도록 하여(소위 ‘백지날인’) 대의원을 선출한 것처럼 만들었는바, 이에 의하여 선출(?)된 제주도의 대의원이 김달삼을 비롯한 6명 이었습니다. 김달삼은 이 백지날인 용지를 휴대하고 북한으로 올라가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8. 21. - 8. 25. 해주대회). 그는 이 대회에서 제주4·3사건의 경과를 보고하고 열렬한 환영과 찬사를 받은 끝에 20대 중반의 나이로 일약 박헌영 등 거물들과 함께 주석단의 일원으로

뽑혔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948. 9. 9.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회에서 그는 연설을 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는데, 그는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민주조선 완전 자주독립 만세! 우리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 .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위한 5·10 선거를 그토록 반대하면서 무장투쟁까지 일으켰던 그가 투쟁의 와중에 북한으로 올라가 김일성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갑 제10호증의 2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236면 ~ 제240면 참조).

그의 마지막 외침은 남로당의 정치노선이 어떠하며 제주4·3사건이 무엇을 위하여 일어난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사실의 묵비

전시 내용은 위와 같은 남로당의 정치노선과 김달삼의 행적을 일체 묵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시내용 중 1947. 3. 1. 시위에 이은 총파업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미군정보고서가 ‘South Korea Labour Party(Communists)’가 파업을 선동하였다고 보고한 것을 우리말로 번역함에 있어 ‘좌익’이 선동하였다 라고만 옮겨 놓은 것

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로당이 공산주의 정당임을 언급하기를 회피한 것입니다. 위 **갑 제4호증**(기획단 회의록)을 보면 기획단 간사위원은 기획단 회의에서 이러한 속내를 드러내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¹²⁾.

피고 측에서는 혹시 남로당의 공산주의 정치노선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6·25를 경험한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남로당이 공산주의정당이라는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지만 그 이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공지의 사실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진보적인 좌파정당 쯤 되는 것으로 짐작할 따름입니다. 이 사건 전시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로당은 결코 오늘날 허용되는 진보적인 좌파정당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헌법상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공산주의 정당입니다.

피고 측에서는 또,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중앙과는 관련이 없이 제주도당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일으킨 것이므로 남로당의 정치노선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도 이유가 없습니다. 제주4·3사건을 일으킨 직접 당사자인 남로당 제주도당도 남로당의 주요 지역당부의 하나로서 남로당의 정치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그 정치노선에 따

12) 그 회의에서 유재갑 위원이, 남로당의 역할(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활동)을 강조하면 안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강창일 간사위원은, 특별법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이므로 진상조사보고서는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이어야 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보고서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바, 보고서 작성 주도자의 이러한 발언에서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방해되는 남로당의 공산주의정당으로서의 성격이나 제주4·3사건의 한반도 공산화 목적 등을 숨겨야 할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 제주4·3사건을 일으킨 이상(당시 단선 단정 반대투쟁은 남로당이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있던 전국적인 거당 투쟁이었음), 남로당 중앙의 명시적인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도당이 따르고 있던 남로당 정치노선의 소개는 진압의 정당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4·3사건에 남로당 중앙이 관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넉넉한 바, 이는 추후 필요시 제출할 것입니다.

이 사건 전시가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하고 있는 이유는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 후의 역사는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데올로기임을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 공산국가들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로당이 공산주의 정당이고, 한반도 공산화를 꿈꾸는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폭력투쟁을 한 것임이 드러난다면, 이를 진압해야 하는 것은 엄중한 당위라는 것이 그 자체로 벌써 드러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 전시는 박헌영과 남로당의 정체를 밝히지 아니하고, 김달삼의 행적을 밝히지 아니한 것입니다.

(2) ‘탄압’의 원인이 된 남로당의 불법 폭력투쟁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 습니다.

이 사건 전시는 제주4·3사건의 한 원인으로서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시는 탄압 사실만을 소개하였지 그 탄압의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탄압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탄압한 사실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탄압을 하게 되었는지의 사정도 소개해야 마땅합니다. 해방 이후 남로당이 군정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게 된 것은 남로당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많은 불법 폭력투쟁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탄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으나 편의상 그대로 사용합니다).

1) 정판사 화폐위조 사건(1946. 5. 조선공산당 시절)

이 사건은 조선공산당 총무부장 겸 재정부장 이관술 등 당 간부들과 당원들이 남한경제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당원 운영의 조선정판사에서 조선은행권을 대량 위조하였다는 사건입니다. 조선공산당에서는 그 사건이 당과 무관하다고 하면서 공산당 파괴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소요사태를 일으켜 재판까지 방해하였으나, 재판결과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공산당 당사무실은 압수 수색을 당하고 당 기관지는 정간처분을 당하였으며, 당 간부들에 대하여는 체포령이 내려져 이후 조선공산당은 지하로 숨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갑 제9호증의 3 신상준 저 제주도4·3사건 상권 205면 등). 소위 ‘탄압’의 시발이었던 것입니다.

2) 1946. 9. 총파업

1946. 9. 박헌영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적인 총파업을 지시하였습니다. 표면적인 동기는 식량문제의 해결이었으나 숨은 동기는 정판사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박헌영이 공산당의 투쟁실력을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조건에 소위 ‘애국자’ (공산당원)에 대한 체포령 철회가 포함된 것이 이를 말해 줍니다. 이 파업은 영등포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철도와 통신을 마비시키고 주요 공장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진압과정에서 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의 3 박갑동 저 박헌영 제146면 ~ 제151면).

3) 1946. 10. 1. 대구폭동

9월 총파업의 불씨가 아직도 남아 있던 1946. 10. 1. 조선공산당 중앙의 지령에 의하여 대구 지역에서 폭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산당의 선동에 동원된 군중들이 쌀을 달라는 구호를 앞세워 과격한 시위를 벌이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시위자 1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흥분한 군중들은 경찰지서와 파출소 등 10여 곳을 점령하고 경찰관과 그 가족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급기야 군정당국은 대구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대구 지역의 폭동사태는 진압하였으나, 소요사태는 인근 성주, 칠곡, 고령, 영천 등 지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구 경북지역에서만 경찰관 사망이 39명, 부상 31명, 민간인 사망 44명 부상 56명이 발생하였고,

공산당도 전국적으로 무려 1500여명이나 구속되었고 조직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갑 제9호증의 4 신상준 저 제주도4·3사건 상권 제214면 ~ 제218면).

4) 1947. 3. 1. 시위

이 사건 전시가 3·1 시위에 대하여서는 이를 제주4·3사건의 시발점으로 지목하여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시위의 전말에 대하여서는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3·1 시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시가 묵비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만 언급하기로 합니다(갑 제10호증의 3 진상조사보고서 제102면 ~ 제107면 등 참조).

가) 3·1 시위는 남로당의 역량강화 전략에 따라 계획된 정치투쟁이었습니다.

1947. 3. 1. 기념행사는 오늘날 통상 거행되는 3·1절 기념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로당(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공산당은 1946. 11. 남로당으로 개칭하였음)은 위에서 본 군정당국의 탄압으로 조직이 크게 위축되어 있었으므로 남로당 중앙당에서는 3·1절 기념행사를 계기로 조직을 정비하고 투쟁력을 강화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1947. 2. 남로당 중앙당은 3·1절이 다가오자 남로당 주도의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열 것을 각 지방

당에 지시하고 조직의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남로당 제주도당의 주관으로 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 세부지침을 세우고 조직을 총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투쟁목표로서 소위 ‘민주주의 임시정부’ (공산주의 정부를 말함)의 수립, 박헌영 체포령 철회, 소위 ‘민주주의 애국투사’ (10. 1. 폭동으로 구속된 자 등) 석방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1947. 3. 1.의 기념행사는 통상의 3·1절 기념행사가 아닌 남로당의 정치투쟁이었는데, 이 사건 전시는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였습니다.

나) 시위는 비합법 투쟁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행사계획에 대하여 군정경찰은 집회만은 허가하되 집회후의 가두시위는 절대 불허한다는 방침을 통고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그때까지 남로당의 비합법 폭력투쟁을 경험한 군정당국으로서 가두시위 과정에서 생길지 모르는 불상사를 미리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남로당은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허가받은 집회가 끝난 후 비합법 투쟁으로 가두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과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주민 6명이 희생당하는 우발적인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전시는 ‘집회’가 합법이었다는 것만 강조할 뿐 ‘시위’가 불법이었던 점은 묵비하고 있습니다.

5) 1948. 2. 7. 폭동

아래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1947. 11. 14. 유엔총회의 결의로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에 의하여 한반도 전체에 대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하는 유엔의 방침이 결정되자, 이에 의하여서는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한 남로당은 이를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1948. 2. 7. 남로당의 지령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총파업과 경찰관서 습격, 교통 통신 시설의 파괴 등 극렬한 투쟁이 벌어졌는바,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39명이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하였으며, 남로당원 등 수 천명이 검거되었습니다(갑 제10호증의 3 진상조사 보고서 제146면 ~ 제149면)

6) 소결

이상과 같이 해방 이후 남로당은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불법 폭력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군정당국은 이러한 불법 폭력 투쟁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이에 관여된 남로당원들을 검거하여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남로당의 활동은 지하로 숨어들게 되고 박헌영은 체포령을 피해 북한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 전시에서 말하는 소위 ‘탄압’의 실체입니다.

이 사건 전시는 남로당이 탄압당한 사실만 부각시켜 강조하였지 무슨 이유로 그와 같이 탄압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묵비하고 있습니다.

나. 무장폭력투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묵비

이 사건 전시는 다른 한 편으로는 남로당 무장대의 폭력투쟁을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더러는 이에 불리한 사실을 묵비하기도 하였습니다.

(1) 경찰과 서청(부족한 경찰력을 보조하는 우익청년단, 이하 통틀어 경찰이라고 함)의 남로당에 대한 탄압을 마치 제주도민 일반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의 탄압은 남로당의 비합법 폭력투쟁에 대한 탄압이었으므로 탄압의 대상은 이에 관여된 남로당원(그 추종자 포함)인 것이지 무고한 제주도민 일반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전시는 탄압의 대상이 남로당원이라는 사실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제주도민을 탄압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브로셔의 전시내용 소개에서와 같이 이 사건 전시는 제주4·3사건의 주체를 ‘제주도민’으로 보았습니다. 전시내용 곳곳에서 남로당 무장대를 영어로 번역함에 있어 ‘Armed Civilian Groups’, 혹은 ‘Civilian Protestors’ 라고 한 것은 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4·3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탄압에 대한 저항이고 저항의 주체가 제주도민이라고 하고 있으니 특별히 탄압받은 사람을 특정하지 않는 한 자연히 탄압받은 사람도 제주도민인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탄압받은 사람이 각 종 불법 폭력투쟁을 벌인 남로당원이나 아니면 무고한 제주도민 일반이냐에 따라 탄압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달라지고 ‘저항’의 정당성 여부의 평가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전시는 탄압의 대상이 마치 일반 제주도민인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2) 단선 단정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단선 단정 반대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였습니다.

1) 남로당 무장대가 폭력투쟁의 명분으로 내 세운 가장 중요한 것이 단선 단정 반대주장입니다. 이 사건 전시에서는 단선 단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갑 제11호증** 전시물 사진).

‘좌파들은 물론 김구 김규식 등 우파 일부에서도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는데 이승만과 한민당은 단선 단정을 찬성하였다’,

‘단선 단정은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오고 분단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불러오는데, 과연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한 전시 내용은 곧 이승만이 단선 단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6·25 전쟁까지 초래하였으니 이승만은 분단의 책임자요 전쟁의 원인제공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내용은 한반도를 둘러싼 당시의 국제 정치상황과 국내 정치상황에는 완전히 눈을 감은 채 ‘분단정부가 옳으나 통일정부가 옳으나’의 우문에 답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남로당 무장대의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2) 그러나, 단선 단정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국제 국내의 정치상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지면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 소장에서는 이를 간략히 요약하기로 합니다.

8·15 해방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강대국의 전쟁승리로 얻어진 것이어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는 소련군(1945. 8. 9.)과 미군(1945. 9. 8.)이 북과 남에 진주해 들어왔습니다. 한반도에 독립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소련과 미국이 소위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했으나 당시 이미 소련과 미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냉전이 시작되어 서로가 자기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려다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표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겼고 이에 따라 1947. 11. 14.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에 관한 결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의 선거감시단이 1948. 1. 서울에 들어 왔으나 소련의 스탈린과 그의 지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던 김일성은 유엔 선거감시단의 북한지역 입북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인구가 남한보다 훨씬 적고, 당시 정치지도자로서의 인지도에 있어 김일성이 이승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였으므로, 남북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한반도에 김일성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남북한 전체에 대한 총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지자 할 수 없이 유엔 총회의 위임을 받은 소총회는 1948. 2. 26. 우선 현실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지역(남한)만이라도 먼저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하였는데, 이 결의를 선거감시단과 미군정 및 남한 인구의 절대 다수(선거참여율 71.6%)가 받아들여 문제의 단선 즉 1948. 5. 10.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총선이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3) 경위가 이와 같은 이상 단선 단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 유엔총회 결의를 소개하고(그 결의대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였더라면 통일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다) 김일성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소개하여 거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전시는 단선 단정의 경위에 관하여는 일체 묵비한 채 분단이 옳으나 통일이 옳으냐는 식으로 초등학생 수준의 우문만 제시함으로써 남로당 무장대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제주4·3사건과 관련이 없는 각종 민중항쟁 영상과 제노사이드 영상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제주4·3사건의 성격을 은연중 암시하였습니다.

1) 전시내용의 요지 소개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시에는 제주4·3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러 민중항쟁의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넬슨 만델라의 남아공 인종차별 철폐운동, 필리핀의 독재타도를 위한 민중봉기, 대만의 2. 28. 민중봉기 등입니다(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각 민중항쟁 전시물 사진). 이러한 항쟁들은 오늘날 대체로 그 항쟁이 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제주4·3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러한 민중항쟁의 역사를 이 사건 전시가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시관이 스스로 제주4·3사건도 역시 정당한 민중항쟁이라는 평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2) 한편 이 사건 전시에서는 또 제주4·3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류역사상의 제노사이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세르비아의 코소보 인종청소,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주민 학살, 일본군의 남경 대학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킬링 필드 등입니다(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각 제노사이드 전시물 사진). 이러한 제노사이드 역사들은 정당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반인륜의 범죄로서 국제 형사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학살범죄들입니다.

이 사건 전시에서 제주4·3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이러한 제노사이드 역사

를 소개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생긴 많은 인명피해를 제노사이드에 비유함으로써 진압의 범죄성을 암시하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6. 관람자들이 가지게 될 평가와 인식

(1) 이 사건 전시관의 초입에 해당하는 제1관 프롤로그 에서는 백비(비문 없는 비석)를 놓혀 놓았습니다. ‘봉기’, ‘항쟁’, ‘폭동’ 등 다양하게 불려온 제주4·3사건은 아직도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후에 통일이 되는 그날 진정한 제주4·3사건의 이름을 새겨서 비석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전시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서문에서 ‘진상조사보고서는...제주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고, 이는 후세 사가들의 몫’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생각됩니다(평가를 유보하였다가 후일 통일이 되면 그 때 가서 어느 쪽으로 통일이 되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 항쟁이나 폭동이냐의 이름을 붙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지금의 시점에서 당당히 평가를 내렸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백비에도 불구하고 위 전시내용의 문제점 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시에서는,

한편으로는, 진압의 당위성을 알게 하는 사실들을 일체 묵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로당의 폭력투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관계되는 사실을 묵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연중에 남로당의 무장투쟁은 정당한 것이고 군경의 진압은 부당한 것으로 암시함으로써,

전시를 관람한 관람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즉, ‘불의에 항거한 정당한 민중저항을 집단학살의 방법으로 진압’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시관이 안내 브로셔에서 스스로 소개한 전시내용의 요지(위 제4의 가.항)와 같으므로 이러한 평가의 유도는 전시관 측이 의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에 의하여 관람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인식과

이승만과 진압군경이 집단학살범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수많은 관람자들에게 확산되어 나감으로써 원고들은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7. 불법행위의 성립

가. 사료의 전시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무에 위배

(1) 헌법상의 의무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원리를 헌법의 지도 원리로 설정하였고, 그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에 필수적인 절차였던 5·10제헌의회선거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 인사, 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는 위와 같은 우리 헌법의 지도 원리상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렇다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피고 재단법인 제주4

· 3평화재단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법인으로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상 지도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한 세력에 대하여는 관람자들에게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헌법의 기본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법률상의 의무

피고들이 이 사건 전시를 운영하는 근거는 제주4·3사건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활동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는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의 자료의 수집, 분석에 관한 사항,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제3조 제1, 2항), 위원회는 구성 후 2년 내에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및 단체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 2, 3항). 나아가 정부는 다른 국가에 자료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4항). 한편, 위원회는 자료 수집 및 분석 완료 후 6개월 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7조).

이처럼 특별법이 위원회를 통하여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 진상조사보고서 제출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각종 행정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진상조사의 객관성을 위하여 기획단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가 작성하는 진상조사보고서는 물론,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전시 역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되는 사실관계는 가감과 왜곡 없이 공정하게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신의칙상의 의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전시관을 한국 현대사의 전문 역사교육관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민들에게 현대사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매년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무료관람을 시키고 있고, 나아가 중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전시관이 자라나는 세대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역사교육을 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관계되는 사실관계는 가감과 왜곡 없이 공정하게 전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도 있다 할 것입니다.

(4) 위 각 의무에 위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모두 위배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시 내용은 한 편으로는 군경이 벌인 진압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알게 하는 사실관계(즉, 남로당의 공산주의 정치노선, 남로당의 불법 폭력투쟁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남로당의 한반도 공산화 목적)를 의도적으로 묵비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공산주의 무장대의 폭력투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김으로써(경찰과 서청의 역할 왜곡, 단선 단정 경위 묵비 등) 제주4·3사건의 배후에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음을 은폐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을 초래 하였습니다

나아가 제주4·3사건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그 당시 남로당 무장대가 폭력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주장을 정부가 수용해 주었어야 할 것이었는가, 아니면 이를 진압하여야 할 것이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에 관계되는 사실관계를 가감과 왜곡 없이 공정하게 전시하여야 할 법률상,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더구나 제주4·3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각종 민중항쟁과 제노사이드

영상까지 함께 전시하여 제주4·3사건의 성격을 암시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승만과 진압군경에 대하여 지극히 나쁜 인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나. 이승만과 진압 군경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이들은 종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자랑스럽게 여긴 사람들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제주 4·3사건을 진압한 자’라는 객관적, 외부적 평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전시로 인하여 이승만은 정권욕에 사로잡혀 통일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분단의 원인이 된 단선 단정으로 나아감으로써 정당성 없는 국가를 세웠고, 여기에 항거하는 민중들을 진압군경이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으로 평가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들을 집단학살범으로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람은 죽은 후에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살아 있는 동안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로 보장 받는 것이므로, 사자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사자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다만 재산상속이 사망시를 기준으로 개시되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사자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됨으로써 그 유족의 명예, 명예감정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자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와는 별도로 유족 자신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06.08.10.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 참조).

이에 원고 이인수와 원고 박익주는 이승만 대통령과 진압군 연대장 박진경의 유족으로서 각 그 선조와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이 사건 전시의 금지를 구함과 동시에 유족의 지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원고 박능하, 김수근은 진압작전에 직접 참가한 당사자로서 위 원고들의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이 사건 전시의 금지를 구함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 대한민국 애국 시민, 단체 등에 대한 자긍심 훼손 등 인격권 침해

한편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이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임을 천명하고 이를 위하여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변호사 단체이고, 원고 이선교는 제주4·3사건 관련 현대사가 올바르게 정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로서, 위 원고들은 누구보다도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시는 5·10 제헌의원선거 및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

대하여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로당 제주도당의 활동이 마치 정당한 민중항쟁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결국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은 종래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자긍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원고들의 이러한 자긍심은 위 원고들의 평소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형성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시는 결국 이러한 위 원고들의 인격권 또는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시의 금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 원고들이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이 사건 전시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전시의 금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그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할 본래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이 사건 전시를 막아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상황에 휘둘려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에 있어서 일종의 ‘무자력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원고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전시의 금지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 전시금지 및 손해배상의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건 전시의 운영 주체로서, 피고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은 그의 지휘·감독을 받아 2015. 1. 15.부터 이 사건 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공동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① 피고들은 이 사건 전시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 3. 28.부터 2015. 1. 14.까지의 기존 이 사건 전시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 원고 이인수에게는 1억 원, 원고 박익주에게는 5,000만 원, 원고 박능하, 김수근에게는 각 2,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피고들은 각자 2015. 1. 15.부터 이 사건 전시를 중단하는 날까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이인수에게는 월 1,0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원고 박익주에게는 월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원고 박능하, 김수근에게는 각 월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8. 여론 - 관할의 문제

이 사건의 피고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고, 이 사건 전시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내 제주4·3평화기념관에 전시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은 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바, 이는 만약 이 사건이 피고들 소재지의 법원에서 심리될 경우 지역 여론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귀원에 관할이 있음도 명백한바, 향후 심리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9. 결론

가. 이제 원고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특별법에 내재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진상규명보다 희생자결정이 먼저 나오게 되고, ‘희생자 명예회복과 국민화합’을 중시한 위원회의 잘못된 희생자결정은 진상규명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3. 나. 항).

(2) 잘못된 희생자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불의에 맞선 제주도민의 저항을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이라는 기본구도로 설정하였습니다(4. 가. 항).

(3) 이러한 기본구도에 따라 전시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한 편으로는 진압의 당위성을 알게 하는 사실들은 철저히 묵비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남로당의 무장투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 또는 그에 불리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나아가 제주4·3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중항쟁의 역사와 제노사이드 영상을 소개함으로써 제주4·3사건의 성격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5. 항).

(4) 그 결과 전시를 관람한 관람자들로 하여금 제주4·3사건이란 제주도민을 대변한 남로당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이 집단학살로 진압한 사건이라는 평가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러한 평가에 의하여 관람자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인식과 이승만과 진압군경에 대하여 집단학살자라는 지극히 나쁜 인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6. 항).

(5) 피고들은 일반 사인이 아니고 공적 지위에 있는 기관으로서 이 사건 전시관을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제주4·3사건의 평가에 관계되는 사실관계는 가감과 왜곡 없이 공정하게 전시하여야 할 헌법상, 법률상,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피고들은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극히 불공정하게 전시함으로써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였습니다(7. 가. 항).

(6) 이로써 피고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7. 나. 다. 항).

나. 제주4·3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크나큰 비극 중의 하나입니다. 그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그로 인한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어 진정한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객관적인 진실이 한 치의 가감도 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면서 객관적 진

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는 이 사건 전시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 | | | |
|------------|---|---------------------------|
| 1. 갑 제1호증의 | 1 | 제적등본(이인수) |
| | 2 | 제적등본(박익주) |
| | 3 | 병적증명서(박능하) |
| | 4 | 병적증명서(김수근) |
| | 5 | 사실확인서(이선교) |
| | 6 | 법인등기부등본(한변) |
| 1. 갑 제2호증의 | 1 | 화해와 상생 표지 및 목차 |
| | 2 | 화해와 상생(133면) |
| | 3 | 화해와 상생(148면 ~ 150면) |
| | 4 | 화해와 상생(174면) |
| | 5 | 화해와 상생(68면 ~ 69면) |
| | 6 | 화해와 상생(93면~ 102면) |
| 1. 갑 제3호증 | | 현길언 著 과거사 청산과 역사 만들기 |
| 1. 갑 제4호증 | | 기획단 회의록 |
| 1. 갑 제5호증 | | 나종삼 著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 |

성을 돌이켜 보면서

- | | | |
|-------------|-----|-------------------------------|
| 1. 갑 제6호증 | | 브로셔 |
| 1. 갑 제7호증 | | 제주도 2013년 주요업무보고 |
| 1. 갑 제8호증의 | 1 | 박갑동 著 박헌영 표지 및 목차 |
| | 2 | 박갑동 著 박헌영(283면 ~ 287면) |
| | 3 | 박갑동 著 박헌영(146면~151면) |
| 1. 갑 제9호증의 | 1 | 신상준 著 제주도4·3사건(상권) 표지 및 목차 |
| | 2 | 신상준 著 제주도4·3사건(상권)(165면) |
| | 3 | 신상준 著 제주도4·3사건(상권)(205면) |
| | 4 | 신상준 著 제주도4·3사건(상권)(214면~218면) |
| 1. 갑 제10호증의 | 1 | 4·3진상조사보고서 표지 및 목차 |
| | 2 | 4·3진상조사보고서(236면~240면) |
| | 3 | 4·3진상조사보고서(102면~107면) |
| | 4 | 4·3진상조사보고서(146면~149면) |
| 1. 갑 제11호증 | | 전시물 사진 |
| 1. 갑 제12호증의 | 1-5 | 각 민중항쟁 전시물 사진 |
| 1. 갑 제13호증의 | 1-7 | 각 제노사이드 전시물 사진 |

2015. 3. .

원고 1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 고 스**

담당변호사 이 용 우

담당변호사 김 무 겸

담당변호사 이 무 섭

담당변호사 배 준 식

원고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 성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